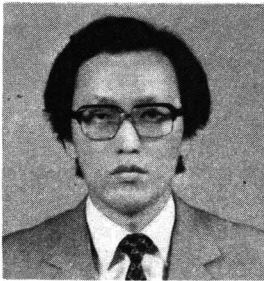


-懸案實態의 考察과 發展方向을 中心으로-

# 医療保險의 現況과 政策課題

保健社会部 印 敬 錫  
保險制度課長



本稿는 우리나라 福祉制度의 根幹을 이루는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課題 및 展望에 關係 概括한 글이다.

이 章에서는 醫療施惠의 均等한 附与를 위해서는 실시중인 地域 醫保示範事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實情에 適合한 형태로 補完하여 擴大 해나가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증대하는 수진율과 함께 保險財政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受診 倫理의 정착과 효율적인 保險 財政의 管理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既存의 量的 위주의 제도운영면에서 이제는 質的 內實化를 圖謀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원의 지역간 均等分配와 機能分擔등을 中心으로 제도의 발전방향을 摸索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編輯者註>

## 1. 序 言

건전한 신체를 갖는다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醫療保障制度의 실시는 국민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됨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노동의 능률과 생산성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에 의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빈곤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하여 국민의 기초욕구 충족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고 따라서 사회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할 여력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에 관한 法畧은 1960년대에 제정되었으나 1970년대

초반까지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차례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성과로 국민경제는 量的·質的成長을 이루게 되었고 그동안 소홀해 오던 社會開發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7년부터 시작된 제 4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부터는 社會開發과 衡平分配의 증진을 주요 개발전략의 하나로 삼고 그의 일환으로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醫療保護와 醫療保險制度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부터 醫療保護事業을, 동년 7월 부터는 醫療保險事業을 실시하여 그 적용대상과 수혜내용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중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医療保險의 現況

### 가. 適用人口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 현재는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97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보험도 점진적으로 군인가족, 퇴직연금수급자(퇴역연금수급자 포함)에 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또한 1981년에 의료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동년 7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3개 군에 실시한데 이어 1982년에 3

개 시·군을 추가하여 현재 6개 시·군에 실시 중에 있으며, 1981년 12월부터 사업장근로자 이외의 자영자에 대하여도 직종별 신청에 의거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하여 현재 문화예술인, 개인택시운전사등 11개 직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적용되어 1984년 10월말 현재 전인구의 40.3%에 해당하는 16,353천명에 이르고 있다. (표-1)

### 나. 保險給与 実績

医療保險事業이 계속 확대적용됨에 따라 연도별 총진료건수가 사업초년도인 1977년 883천건에서 1983년에는 36,140천건으로 늘어나 保險給与가 크게 증가하였고 受診率의 증가, 보험수가의 인상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여 保險給与費의 지출을 가중시키고 있다(표-2).

(표-1) 연도별 의료보험 적용 인구

(단위: 천명)

구 분	'77	'78	'79	'80	'81	'82	'83	'84. 9
전 인 구	36,436	37,019	37,605	38,124	38,723	39,331	39,951	40,578
적 용 인 구 (전인구대비율)	3,212 ( 8.8)	3,883 (10.5)	7,791 (20.7)	9,111 (23.9)	11,407 (29.5)	13,611 (34.6)	15,577 (38.9)	16,353 (40.3)
사 업 장 근 로 자	3,149	3,820	4,684	5,388	7,261	8,998	10,572	11,003
공 무 원 등	-	-	3,044	3,660	3,863	3,794	3,901	3,951
직 종 및 지 역	63	63	63	63	283	819	1,104	1,399

(표-2) 보험급여비 지출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77 (6월분)	'78	'79	'80	'81	'82	'83
보 험 급 여 비 (백 만 원)	4,579	15,516	72,364	138,022	189,826	288,421	384,511
총 진 료 건 수 (천 건)	883	2,889	11,169	17,500	22,365	28,097	36,140
수 진 율	0.56	0.82	1.46	2.00	2.16	2.38	2.64
1인당 진료비 (원)	2,361	6,954	14,335	22,358	25,520	33,872	39,801
1건당 진료비 (원)	8,396	8,531	9,813	11,190	11,830	14,069	15,175

주: 제1종 및 공·교 의료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 다. 保險財政

의료보험재정은 그 收入의 대부분이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며 支出은 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되고 있다. 그간 보험급여비의 지출증대에 따라 보험재정도(표-3)와 같이 급격히 팽창되어 왔다.

### 3. 앞으로의 課題 및 展望

#### 가. 適用對象의 擴大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보장사업에 착수한 이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1984년 10월말 현재 의료보험 40.3%, 의료보호 8.0%, 도합 48.3%에 해당하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우리의 의료보장사업은 지난 7년동안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중 의료보험을 적용종별로 구분해 보면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의료보험(제1종)은 그 적용대상인구 12,144천명의 약 90%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정도의 소규모사업장들도 앞으로 수년내에 대부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적용대상인구 3,951천명 전원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과자

영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2종 의료보험은 적용대상인구 21,225천명중 약 5%가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불행히 아직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확대적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무릇 사회보장의 기본적 목표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Universal)으로 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와같은 未適用國民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하여 1981년부터 地域醫療保險示範事業을 실시하여 현재 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주민의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보험관리 조직의 기능 미약 등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기간이 경과될수록 주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그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한 보험관리운영제도의 개선에 따라 보험재정도 점차 호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외국의 의료보장사업의 경험과 문제점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 擴大模型을 개발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制度運營의 內實化

(표-3) 연도별 보험재정

(단위: 백만원)

區 分	'77 (6個月分)	'78	'79	'80	'81	'82	'83
取 入	14,927	48,690	113,489	179,465	274,270	360,578	442,337
• 保 險 料 庫	14,353	37,361	103,380	160,091	247,859	372,481	409,183
• 國 庫 他	307	698	1,750	2,103	1,775	1,858	1,016
支 出	207	10,631	8,359	17,271	24,636	31,239	32,138
• 保 險 給 与	5,117	25,276	81,159	151,140	209,105	311,708	415,538
• 管 理 運 營	4,579	15,516	72,364	137,022	189,100	286,881	384,511
	538	9,760	8,795	14,118	20,005	24,827	31,027

그간 우리의 의료보험은 시작된지 약 7년이 경과되어 이제는 초창기의 단계를 벗어나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초창기의 量的成長爲主의 제도운영 방식으로 부터 벗어나 점차 質的內實化를 기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그간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앞으로 百年大計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상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인사, 회계, 재무등 사무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조합운영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조합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등 조합관리운영을 좀더 효율화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부양형태 및 관습의 변경에 따라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1985년부터는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장모에게도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피보험자의 자격관리를 좀더 효율화 해나가도록 하되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등 관련기관과의 연계관리방안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는 기간을 그간 동일질병에 대하여 평생 180일에 국한하였으나 우리의 보험제도가 성숙해 감에 따라 이를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하며 우선 1985년부터는 동일상병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180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의 심사·지불에 있어서 현행 行為別酬價制度를 보완하고 진료비 심사방법을 재검토 하는등 제도운영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 다. 保險財政의 安定化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의료보험재정은 급격히 팽창되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受診率의 상승, 扶養率의 증가와 의료보험수가의 상승등 요인에 의하여 보험급여지출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하겠다. 이와같은 보험급여비의 지출 증대로 각 조합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워 졌으며 이에 따라 그

간에 적립하였던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험급여비지출의 증대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고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가입자의 濫受診을 억제하고 부정수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등 수진을 증가를 억제하도록 중점적인 제몽과 홍보로 受診倫理를 확립시켜 나가야하며 보험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행 보험급여의 범위와 진료시 본인부담의 수준을 재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라. 기타 關聯課題

앞으로 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라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의료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의료자원의 확충 및 지역간 균형분포, 국·공립병원 및 보건기관등 공공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등 의료공급 측면에서의 보완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확대에 따라 이 지역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을 적정히 배치하는 문제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의료보험제도는 기존 의료보호 제도와 함께 앞으로 시행하게 될 國民福祉年金制度등 여러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조세제도등 관련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 57 면에서

당월의 입원 및 외래환자 개인별로 진료비 중 미수계정별로 미수금액을 나타낸다.

##### ● 환자 개인별 체납현황

월말 또는 필요시점에 입원 및 외래환자 개인별로 체납금 현황을 나타낸다.

이 이외의 통계로는 관찰환자일보 및 기관 청구 환자들에 대한 청구 진료비 통계등이 있다 하겠다. \*